

2021년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2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원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57건(안건번호 제2021-89782호~9107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89782호(순번 1번)는 블로그 이용자가 외국 출판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9783호~89784호(순번 2번~3번)는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1-89783호(순번 2번)는 예고편 영상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본편의 일부인 예고편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복제 및 전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9784호(순번 3번)의 경우 이용자의 계정 탈퇴에 의하여 해당 블로그가 폐쇄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된 점, 시정권고의 대상이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89785호~89786호(순번 4번~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91071호~91072호(순번 1290번~1291번)는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이며, 리마스터링된 영상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설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심의대상 영상저작물들이 리마스터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4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4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272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1-9613호~988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27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15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외국 출판저작물인 '○○ ○○

○○○○'○ ○○○○○○○○○○○을 PDF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PDF를 다운로드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2권 전체 분량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인터넷 서점 등에서 1권~7권 세트로 약 56,430원에 판매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08건임.

순번 2번은 '○○○○ ○○'의 예고편 영상으로, 제작사인 ○○ ○○○○ ○ ○○○는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예고편을 공개하고 있음.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007화의 예고편을 약 40초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 ‘○○○○○ ○○○’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권리자가 제공하는 공식 영상은 유튜브 설정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재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영상을 국내에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권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해당 영상을 우회 접속 방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전송 중인 일부 블로그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권리자가 제공 중인 동일 회차의 영상은 15초 분량의 영상으로, 40초 분량의 심의대상 게시물과는 영상의 길이와 내용, 편집이 모두 상이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영상은 TV에 방영된 ‘○○○○○ ○○○’ 한 회차의 일부로서 본편에 이어 연속으로 제공되는 영상물을 분리 게시한 것으로 보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제2020-253회 전체위원회에서 일반적인 홍보 목적으로 별도 제작 및 공개하는 예고편 영상물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는 점, 같은 블로그에서 예고편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한바 있음.

따라서, 순번 2번의 경우 본편 영상의 일부인 예고편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인 점, 비록 이용 중인 분량이 짧기는 하나 이는 예고편 영상물의 특성으로, 해당 분량의 이용만으로도 불법 복제 및 전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3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가 2021. 7. 23. 기준으로 폐쇄된 상태임. (순번 3번 채증 자료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인 103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으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

재 “○○○○○○. ○○○○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음.

○○○ 고객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블로그만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고 블로그 삭제를 원하는 경우 ○○○ 계정 자체를 탈퇴하여야만 함.

순번 3번의 경우 해당 블로그의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재차 일어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점, 존재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검토보고서의 “블로그만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고”라는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한 블로그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였음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는 삭제 및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의 계정이 현존하여 경고의 시정권고가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이용자가 계정 자체를 탈퇴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결하여야 함. 사안에서 블로그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추

측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계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고의 시정권고가 아니라 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귀결하고자 작성한 표현임.

- B 위원: 순번 2번은 본편의 일부인 예고편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복제 및 전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이고, 순번 3번은 해당 블로그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여 시정권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D, A, E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은 부결하고, 순번 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건임.

(순번 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6화를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으로,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300원에 구매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6번~128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04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심즈 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심즈 4'를 4,5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14. 9. 2.에 출시한 PC 게임이며, STEAM 사이트에서 38,5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57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를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84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1. 5. 12.에 개봉한 국내 영화임.
(방송 '로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02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로키'를 3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시즌1 1

화~6화 전체 분량인 약 50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즈니 플러스에서 2021. 6. 9.부터 7. 14.까지 방영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90번~129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 ○○○○'를 각 판매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건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국내에서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이라는 점,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재개봉 시점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설사 인정된다고 하여도 심의대상 영상저작물들이 리마스터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원 영상저작물과 리마스터링한 영상저작물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화질 개선 내지 인터미션(intermission) 부분 삭제 등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1939년 개봉 이후 줄거리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어떠한 편집도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A 위원: 본 안건은 리마스터링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리마스터링 영상저작물과 당시 심의대상 게시물을 비교한바 있음.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화면 종횡비가 4:3인데 반하여, 리마

스터링 영상저작물은 16:9였음. 또한 자막의 내용 및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 심의대상 게시물도 동일한 형태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리마스터링한 버전이 아닌 것으로 추측됨.

- A 위원: 미국 내에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은 명확한 사실임. 리마스터링한 영상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것이 아니라, 원 영상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것이면, 미국 내에서 리마스터링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권이 생기더라도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290번~1291번은 부결하고, 순번 6번~128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90번~1291번은 부결하고, 순번 6번~128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89784호(순번 3번), 제2021-91071호~91072호

(순번 1290번~129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9782호-89783호(순번 1번~2번), 안전번호 제2021-89785호~91070호(순번 4번~1289번)는 불법복제 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2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제 제2021-9613호~9884호(순번 1~272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